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호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9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 : 윤호중・홍기원・한병도

김한규 · 정성호 · 이병진

조승래 • 박희승 • 강득구
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 자등(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)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피해근로자등을 위해 관련 사실 증언을 하는 등 피해근로자 등을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력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, 이와 더불어 불리 한 처우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 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 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(안 제76조의3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3제6항 중 "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"를 "근로자, 피해근로자등 및 피해근로자등의 조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
- 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
- 3.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 치
- 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- 5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
- 6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
- 7.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, 피해근로자등 및 피해근로자등의 조 력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	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
시 조치) ① ~ ⑤ (생 략)	시 조치) ① ~ ⑤ (현행과 같
	<u></u> 이
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	6
발생 사실을 신고한 <u>근로자 및</u>	<u>근로자, 피</u>
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	해근로자등 및 피해근로자등의
<u>밖의</u>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	조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
아니 된다.	하나에 해당하는
<u> <신 설></u>	<u>1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</u>
	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
	<u>조치</u>
<u><신 설></u>	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
	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
<u><신 설></u>	3.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
	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
	는 인사조치
<u><신 설></u>	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
	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
	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
	<u>급</u>
<u><신 설></u>	5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
	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
<u><신 설></u>	6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

	<u>언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</u>
	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
	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
<u><신 설></u>	7.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,
	피해근로자등 및 피해근로자
	등의 조력자의 의사에 반하는
	불리한 처우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